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208-7-0301
건 명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의 뢰 인	오산새마을금고이사장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9-1(우만동, 유경프라자 5층)
대표전화 : 031-268-4855 FAX : 031-268-4575

인증서번호 : P220808-D001
심의일자 : 2022-08-08

가 격 심 의 인 증 서

감정서 번호	D42208-7-0301	발 의 처	본사
감정평가액	一金오십사억사백팔십만사천칠백원整 (₩5,404,804,700.-)		
물건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외		
평 가 목 적	공 매		
거 래 처	오산새마을금고이사장	제 출 처	오산새마을금고
담당평가사	이민경		

※ 심사사항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기본적사항의 확정
3. 평가방법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
5. 기타 유의사항의 참작여부

심사의견

적정

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사운영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기에 가격심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신당동, 남산타운5번상가 3,4층) TEL : 02)514-8811 FAX : 02)514-8812

대 상 물 건 현 황

건 명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외



감정평가서번호 : 태평양 제D42208-7-0301

(부 동 산)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 민 경)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지 사 장

이 민 경 (인)
박 충 희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오십사억사백팔십만사천칠백원정 (₩5,404,804,700.-)			
의 뢰 인	오산새마을금고이사장	감정평가목적	공매	
제 출 처	오산새마을금고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수탁자)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일반건축물대장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2. 08. 04	2022. 08. 04	2022. 08. 05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5,942	토지	15,942	-	4,613,897,000
	건물	1,759.35	건물	1,759.35	-	726,032,700
	제시외건물	(293.5)	제시외건물	293.5	-	64,875,000
			이 하 여 백			
	합 계					₩5,404,804,7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이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소재 “당진종합운동장”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시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건물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2년 8월 4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2년 8월 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

1) 본건 일련번호(1) 토지 중 일부는 선하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개별요인으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공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2) 본건 일련번호(2) 토지는 법면 등으로서 개별요인으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공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3) 본건 일련번호(가)는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부 클린룸설비가 되어 있으며,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공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4) 본건 지상위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며, 구조, 용도, 사용자재,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를 적용하였으며, 개략적인 면적사정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으니 공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2022년 개별공시지가 (원/㎡)
1	고대면 슬항리	39	15,623	계획관리	공업용	공장용지	소로한면	사다리 평지	167,400
2	고대면 슬항리	39-4	319	계획관리	공업기타	임야	맹지	사다리 평지	130,500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42125)<광업법>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42125)<광업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건물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건축면적(㎡) / 연 면 적(㎡)	건폐율(%) / 용적률(%)	주용도	구 조	층 수	사용승인일
가	고대면 슬항리	39	1,459.35 / 1,459.35	- / -	공장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2008.06.26
나	고대면 슬항리	39	300 / 300	- / -	공장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2008.06.2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

3.1.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3.2.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토지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 지목	거래일자 / 사용승인일	총거래금액(원) / 토지거래가액(원)[1]	토지단가(원/㎡)
ㄱ	송산면 유곡리 346-5	632 / 201.73	계획관리	상업용 / 대	2020.06.01 / 2004.06.08	260,000,000 / 214,005,560	338,000
ㄴ	고대면 용두리 218-3	660 / 105.85	계획관리	업무용 / 대	2022.03.10 / 1994.07.12	285,000,000 / 221,701,700	336,000
ㄷ	송산면 유곡리 260	237 / 93.75	계획관리	상업용 / 대	2020.04.28 / 1996.03.25	137,500,000 / 124,281,250	524,000
ㄹ	고대면 슬항리 72 외	1,749.32 / -	계획관리	답 / 답	2022.03.16 / -	170,000,000 / 170,000,000	97,000
ㅁ	송산면 무수리 387-5	661 / -	계획관리	자연림 / 임	2020.06.19 / -	60,000,000 / 60,000,000	90,000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거래가액 = 총거래금액 - 건물추정가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원/㎡)	비고
				지 목				
a	고대면 슬항리 39 외	15,623	계획관리	공업용 장	2021.04.16	담보	244,000	-
b	고대면 슬항리 11-1	50,133	계획관리	공업나지 답	2021.12.31	자산재평가	259,000	-
c	고대면 슬항리 138-1	1,302	계획관리	공업용 장	2022.06.20	담보	251,000	-
d	송산면 당산리 469-5	17,739	계획관리	공업용 장	2019.08.16	자산재평가	283,000	-
e	고대면 슬항리 13-9	137	계획관리	답 전	2021.12.31	자산재평가	73,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가격수준(원/㎡)	비 고
소규모 공장지대	계획관리	공업용	소로변	@300,000~@340,000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 등

4. 경매통계

지 역	기 간	물건종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건)
충청남도 당진시	최근 1년	공장용지	58.29	67.97	2

[출처: 태인법원경매정보]

Ⅳ. 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원가방식의 적용

1.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1.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비교	x	개별요인 비교	x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2022.01.01]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도로접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1	A	고대면 슬항리	22	3,533	계획관리	공업용	장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161,000
2	B	고대면 슬항리	산11-5	7,016	계획관리	자연림	임	소로한면	부정형 완경사지	23,5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적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A	충청남도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2022.01.01 ~ 2022.06.30 : 0.859 2022.06.01 ~ 2022.06.30 : 0.103
B	충청남도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2022.01.01 ~ 2022.06.30 : 0.859 2022.06.01 ~ 2022.06.30 : 0.103

▌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	A	2022.01.01 ~ 2022.08.04	(1 + 0.00859) x (1 + 0.00103 x 35/30)	1.0098
2	B	2022.01.01 ~ 2022.08.04	(1 + 0.00859) x (1 + 0.00103 x 35/30)	1.0098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다.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개별요인 비교항목 [공업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조건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0	0.95	1.00	0.90	0.98	1.00	0.838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선하지 및 현황 도로부분 면적비율 등) 열세합니다.						
2	B	0.85	0.93	1.00	0.90	1.00	1.00	0.71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 및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 유사토지 가격수준과 경매통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비교사례 선정

비교사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다음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총거래금액(원) 토지거래가액(원)	토지단가(원/㎡)
거래사례	ㄴ	고대면 용두리 218-3	660 105.85	계획관리	업무용 대	2022.03.10 1994.07.12	285,000,000 221,701,700	336,000
		- 배분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건물적용단가: 1,300,000원/㎡ X 23/50 ≒ 598,000원/㎡ 건물추정가액: 598,000원/㎡ X 105.85㎡ = 63,298,300원						
거래사례	ㄹ	고대면 슬항리 72 외	1,749.32 -	계획관리	답 답	2022.03.16 -	170,000,000 170,000,000	97,000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격차율 검토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구 분	비교사례 / 비교표준지	비교사례단가(원/㎡) / 표준지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ㄴ	336,000	1.00734	1.000	1.040	352,005	2.165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액	A	161,000	1.0098	-	-	162,578	

산출내역								
	시점수정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2.03.10 ~ 2022.08.04)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2	1.00	1.02	1.00	1.00	1.040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합니다.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구 분	비교사례 / 비교표준지	비교사례단가(원/㎡) / 표준지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ㄹ	97,000	1.00701	1.000	0.941	91,917	3.873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액	B	23,500	1.0098	-	-	23,730	

산출내역								
	시점수정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2.03.16 ~ 2022.08.04)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0.96	0.98	1.00	0.941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획지조건(경사 등) 및 행정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결정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A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경매통계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16
2	B		3.8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적용단가 (원/㎡)
1	161,000	1.00980	1.000	0.838	2.16	294,000
2	23,500	1.00980	1.000	0.711	3.87	65,000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294,000	15,623	4,593,162,000
2	65,000	319	20,735,000
합계		15,942	4,613,89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거래사례 선정

▌ 거래사례 선정 기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거래사례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총거래금액(원) 토지거래가액(원)	토지단가(원/㎡)
1	ㄱ	송산면 유곡리 346-5	632 201.73	계획관리	상업용 대	2020.06.01 2004.06.08	260,000,000 214,005,560	338,000
		- 배분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건물적용단가: 400,000원/㎡ X 20/35 ≒ 228,000원/㎡(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이상) 절사) 건물추정가액: 228,000원/㎡ X 201.73㎡ = 45,994,440원						
2	ㅁ	송산면 무수리 387-5	661 -	계획관리	자연림 임	2020.06.19 -	60,000,000 60,000,000	90,000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

거래사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ㄱ	충청남도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2020.06.01 ~ 2020.06.30 : 0.057 2020.07.01 ~ 2020.07.31 : 0.151 2020.08.01 ~ 2020.08.31 : 0.101 2020.09.01 ~ 2020.09.30 : 0.036 2020.10.01 ~ 2020.10.31 : 0.126 2020.11.01 ~ 2020.11.30 : 0.075 2020.12.01 ~ 2020.12.31 : 0.126 2021.01.01 ~ 2021.12.31 : 1.471 2022.01.01 ~ 2022.06.30 : 0.859 2022.06.01 ~ 2022.06.30 : 0.103

ㅁ	충청남도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2020.06.01 ~ 2020.06.30 : 0.057 2020.07.01 ~ 2020.07.31 : 0.151 2020.08.01 ~ 2020.08.31 : 0.101 2020.09.01 ~ 2020.09.30 : 0.036 2020.10.01 ~ 2020.10.31 : 0.126 2020.11.01 ~ 2020.11.30 : 0.075 2020.12.01 ~ 2020.12.31 : 0.126 2021.01.01 ~ 2021.12.31 : 1.471 2022.01.01 ~ 2022.06.30 : 0.859 2022.06.01 ~ 2022.06.30 : 0.103

▌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	ㄱ	2020.06.01 ~ 2022.08.04	(1 + 0.00057) x (1 + 0.00151) x (1 + 0.00101) x (1 + 0.00036) x (1 + 0.00126) x (1 + 0.00075) x (1 + 0.00126) x (1 + 0.01471) x (1 + 0.00859) x (1 + 0.00103 x 35/30)	1.03156
2	ㅁ	2020.06.19 ~ 2022.08.04	(1 + 0.00057 x 12/30) x (1 + 0.00151) x (1 + 0.00101) x (1 + 0.00036) x (1 + 0.00126) x (1 + 0.00075) x (1 + 0.00126) x (1 + 0.01471) x (1 + 0.00859) x (1 + 0.00103 x 35/30)	1.031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 개별요인 비교항목 [공업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 경 조 건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 지 조 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ㄱ	1.00	0.97	1.00	0.90	0.98	1.00	0.856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면적 등), 행정적조건(선하지 및 현황 도로부분 면적비율 등)에서 열세합니다.						
2	ㅁ	0.85	0.94	1.00	0.90	1.00	1.00	0.719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원/㎡)
1	338,000	1.000	1.03156	1.000	0.856	298,000
2	90,000	1.000	1.03121	1.000	0.719	66,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298,000	15,623	4,655,654,000
2	66,000	319	21,054,000
합계		15,942	4,676,70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1.2.1.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재조달원가는 건물표준단가에 부대설비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재조달원가	=	건물표준단가	+	부대설비보정단가

가. 건물표준단가

건물표준단가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류번호	용 도	구조 및 지붕	급 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6-1-6-24	공장	철골조 슬래브지붕 샌드위치판넬잇기 (층고6M기준)	3	873,000	35 (30~40)

나. 부대설비 내역

부대설비란 건물표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일련번호	전기	위생·급배수	냉난방	소화설비	자동제어	승강기	기타
가	O	O	-	-	-	-	일부 클린룸 설비
나	O	O	-	-	-	-	-

다. 재조달원가 결정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되 감정평가 목적, 대상건물의 규모 및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용도, 부대설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층	구 조	용 도	재조달원가(원/㎡)
가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680,000
나	1층	경량철골구조	사무실	45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2.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감가수정하였습니다.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x (경과연수 ÷ 내용연수)

일련번호	층	용 도	재조달원가 (원/㎡)	경제적 내용연수(년)	경과연수(년)		감가율	감가누계액 (원/㎡)
					실제	유효		
가	1층	공장	680,000	40	14	14	14 / 40	238,000
나	1층	사무실	450,000	35	14	14	14 / 35	18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3.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층	용 도	재조달원가(원/㎡)	감가누계액(원/㎡)	적용단가(원/㎡)
가	1층	공장	680,000	238,000	442,000
나	1층	사무실	450,000	180,000	270,000

나.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층	적용단가(원/㎡)	공부면적(㎡)	사정면적(㎡)	적산가액(원)
가	1층	442,000	1,459.35	1,459.35	645,032,700
나	1층	270,000	300	300	81,000,000
합 계		-	1,759.35	1,759.35	726,032,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1.3.1. 토지 시산가액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감정평가에 의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토지 시산가액(원)
1, 2	4,613,897,000	4,676,708,000	4,613,897,000
합 계	-	-	4,613,897,000

1.3.2. 건물 시산가액

재조달원가 및 감가수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감정평가에 의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건물 시산가액(원)
가	645,032,700	645,032,700
나	81,000,000	81,000,000
합 계		726,032,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3.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구 분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원)
토 지	4,613,897,000
건 물	726,032,700
제시외건물	64,875,000
합 계	5,404,804,700

Ⅴ. 감정평가액 결정

1.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 지	4,613,897,000
건 물	726,032,700
제시외건물	64,875,000
합 계	5,404,804,700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5,404,804,700
합 계	5,404,804,700

(부 동 산)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원/㎡)	금 액(원)	
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공장용지	계획관리	15,623	15,623	294,000	4,593,162,000	
가	동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금암로 389	위지상	공장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판넬) 1층					
				1층	1,459.35	1,459.35	442,000	645,032,700	680,000 x26/40
나	동소	위지상	공장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판넬) 1층					
				1층	300	300	270,000	81,000,000	450,000 x21/35
2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4	임야	계획관리	319	319	65,000	20,735,000	
	소 계							**₩5,339,929,700**	
	(제시외건물)								
㉠	동소	39 위지상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175)	175	300,000	52,500,000	
㉡	동소	39 위지상	창고	이동식컨테이너 단층	(27)	27	-	1,000,000	

(부 동 산)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원/㎡)	금 액(원)	
㉠	동소	39 위지상	창고	사이딩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37.5)	37.5	250,000	9,375,000	
㉡	동소	39 위지상	창고	이동식컨테이너 단층	(27)	27	-	1,000,000	
㉢	동소	39 위지상	창고	이동식컨테이너 단층	(27)	27	-	1,000,000	
	소 계							**₩64,875,000**	
	합 계							**₩5,404,804,700.-**	
				이	하	여	백		

(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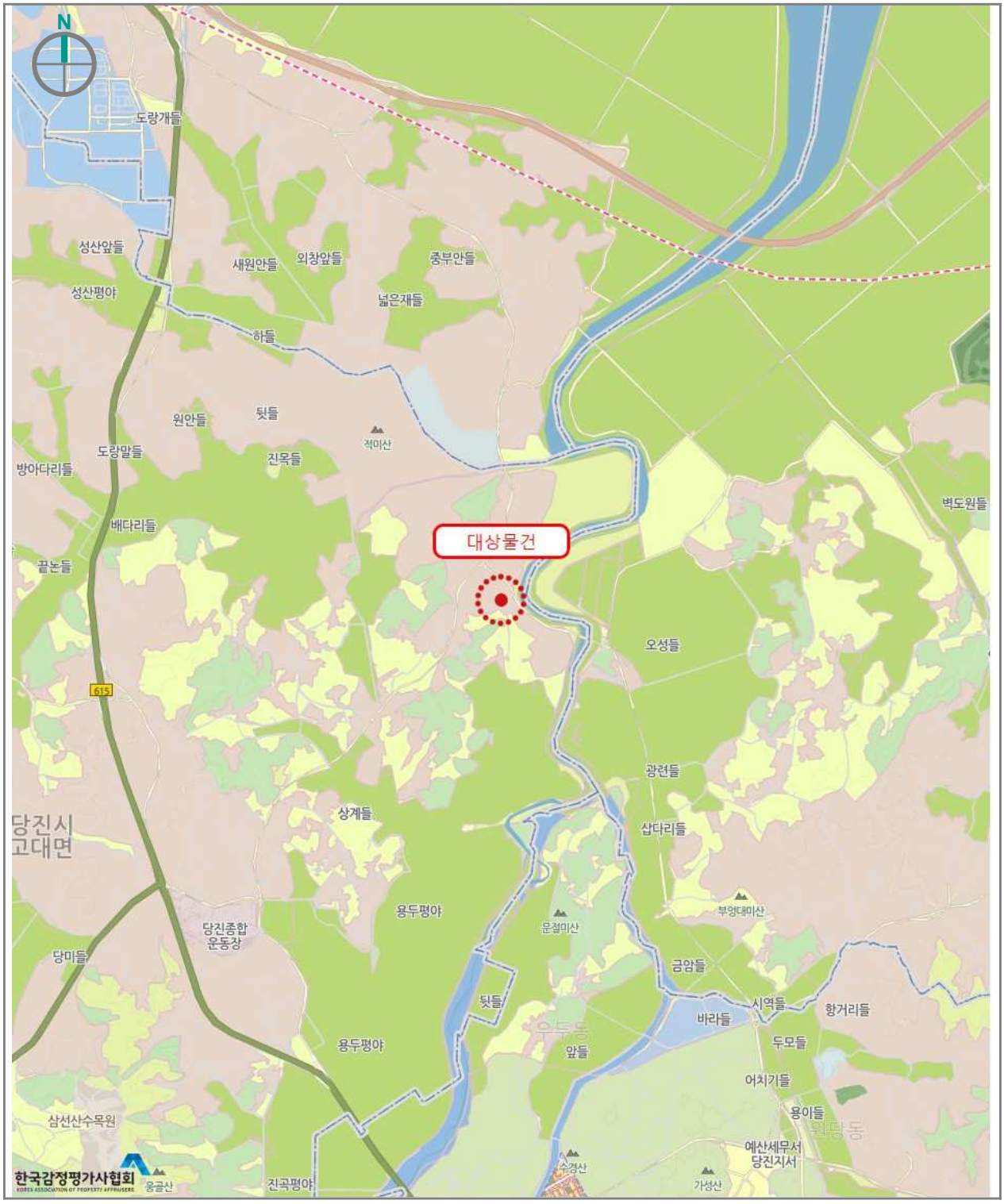
지 리 적 위 치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소재 "당진종합운동장"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 위 환 경	본건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입니다.
교 통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노선수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환경은 보통입니다.
접 면 도 로	일련번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14m 내외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련번호(1) 토지를 통하여 인접 공도와 연결됩니다.
지세 및 형상	일련번호(1),(2)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입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1) :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선하지 저촉 및 현황 도로입니다. 일련번호(2) : 자연림(법면)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12~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42125)<광업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42125)<광업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 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건물 구조 및 마감재	일련번호(가)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 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8.06.26) 외벽: 판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일련번호(나)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 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8.06.26) 외벽 : 판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가) : 공장 및 클린룸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나) :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기본적인 위생 · 급배수 · 급탕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있으며, 일련번호(가)의 경우 일부 클린룸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기호㉠~㉤)이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 대 관 계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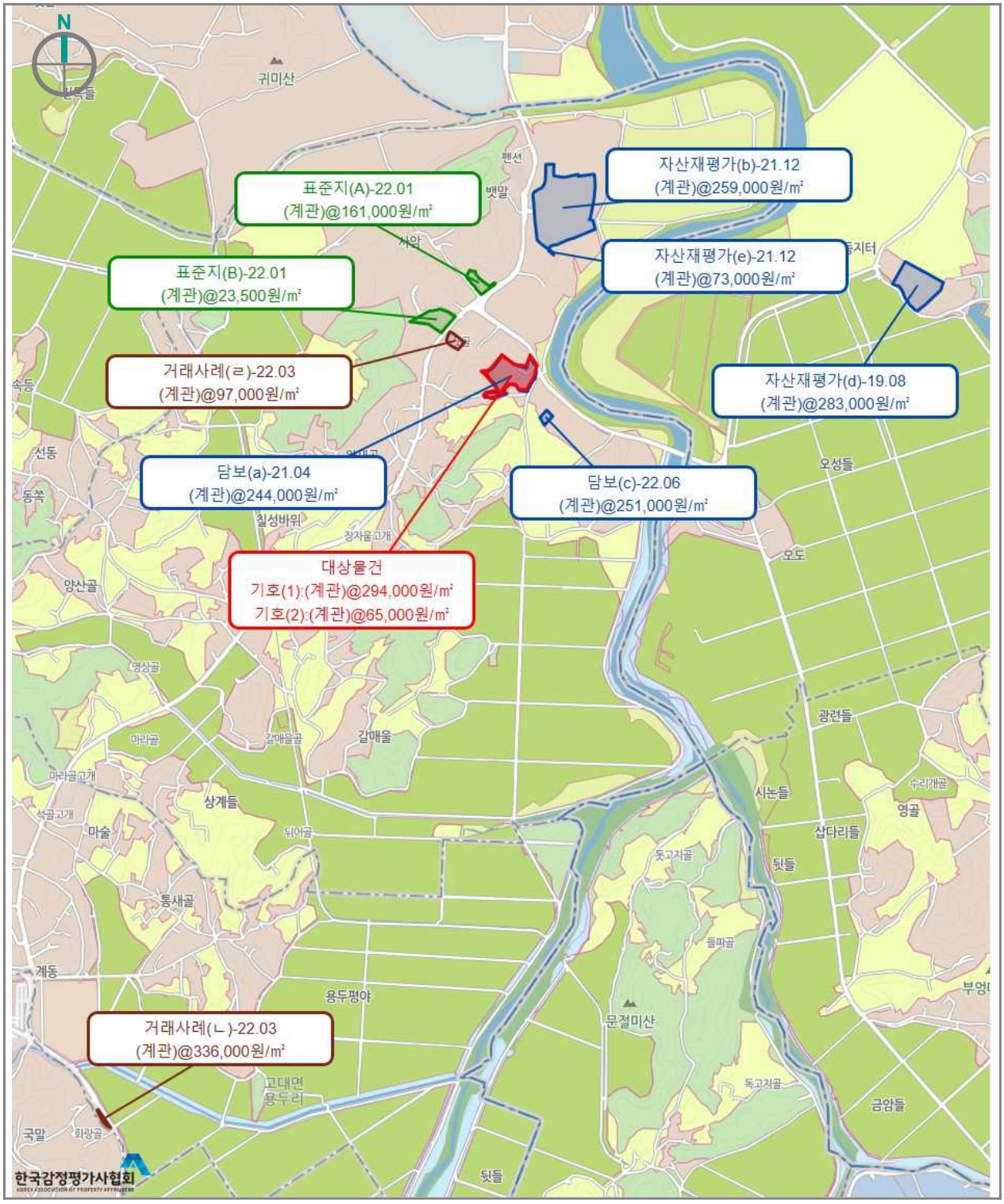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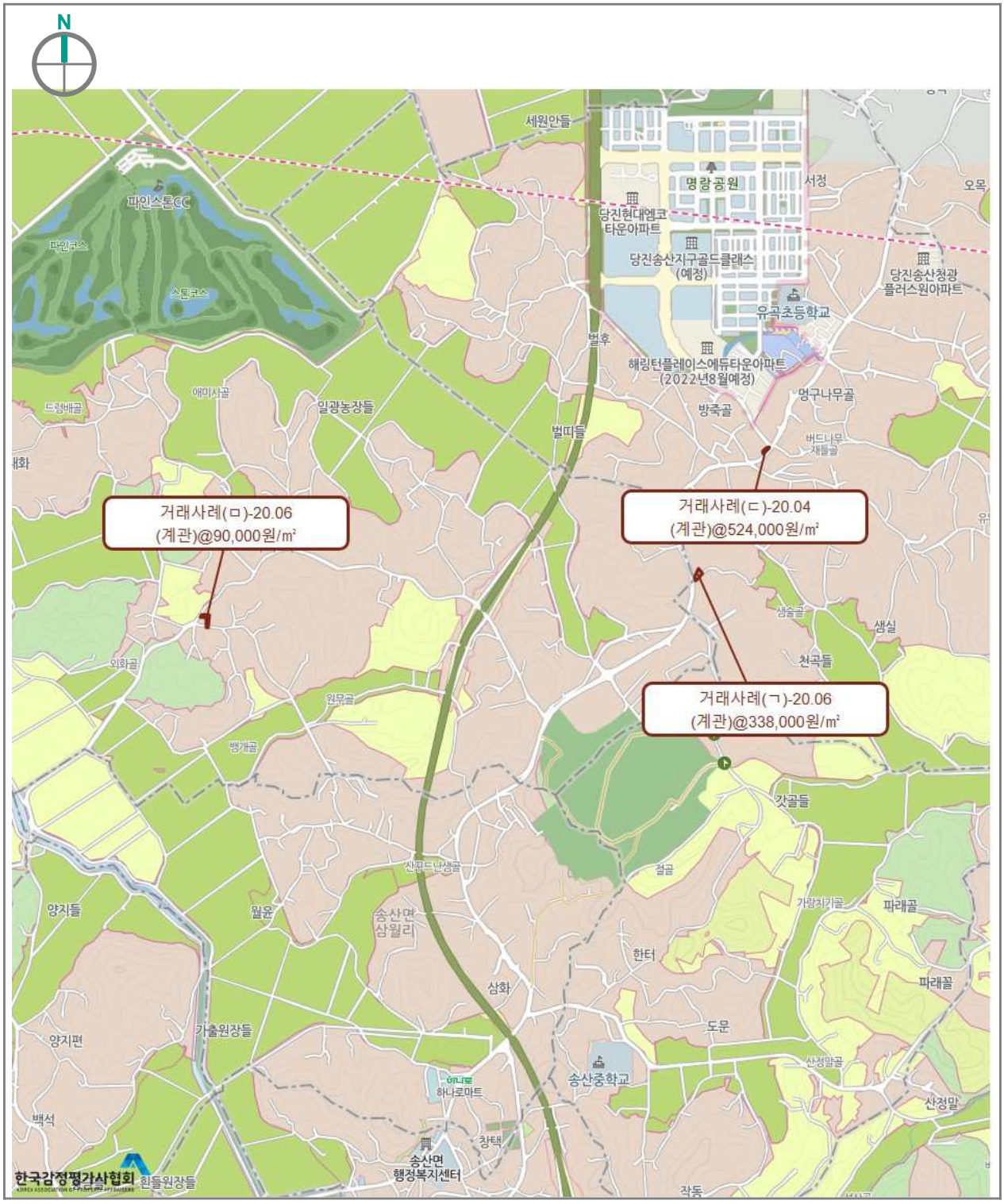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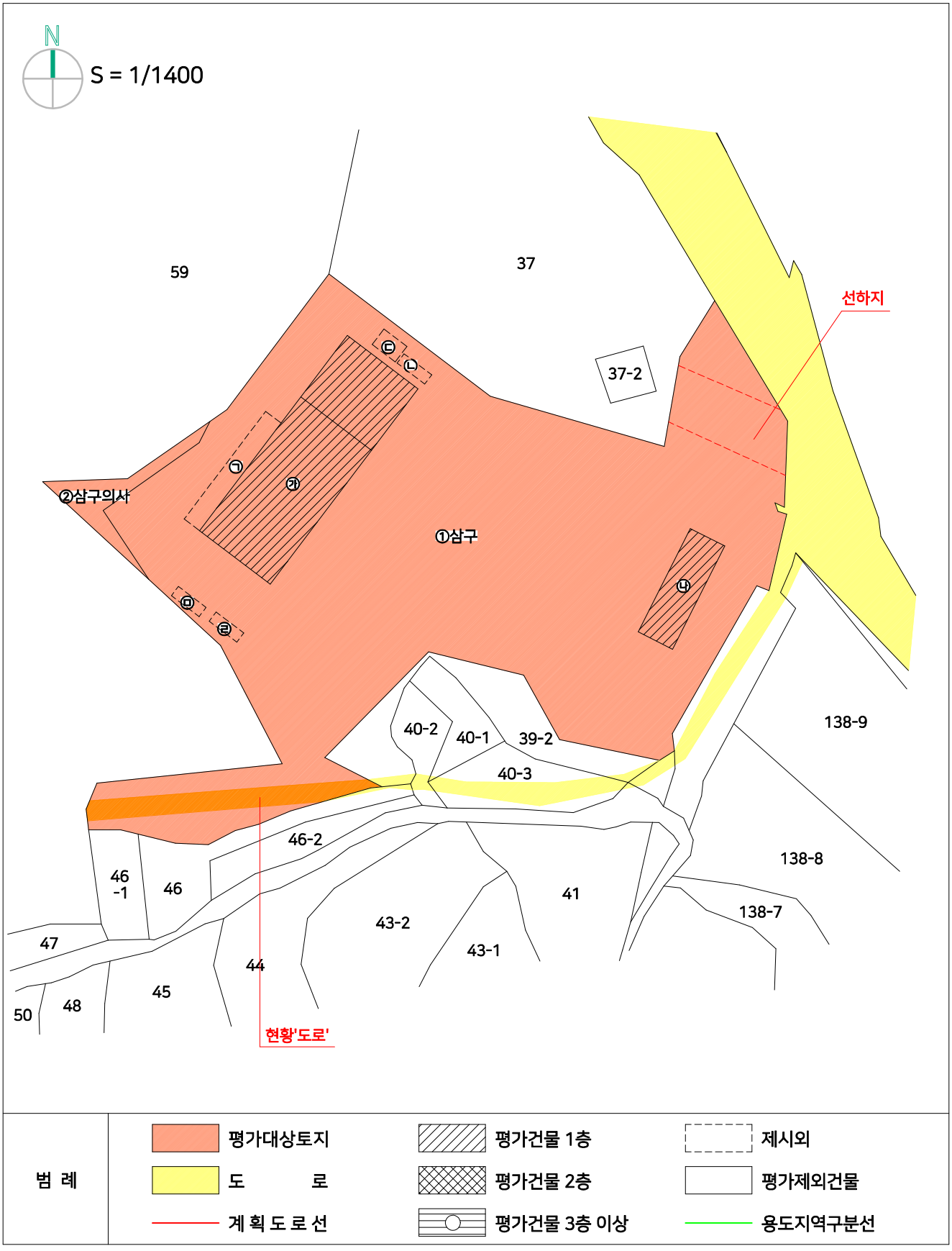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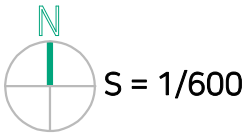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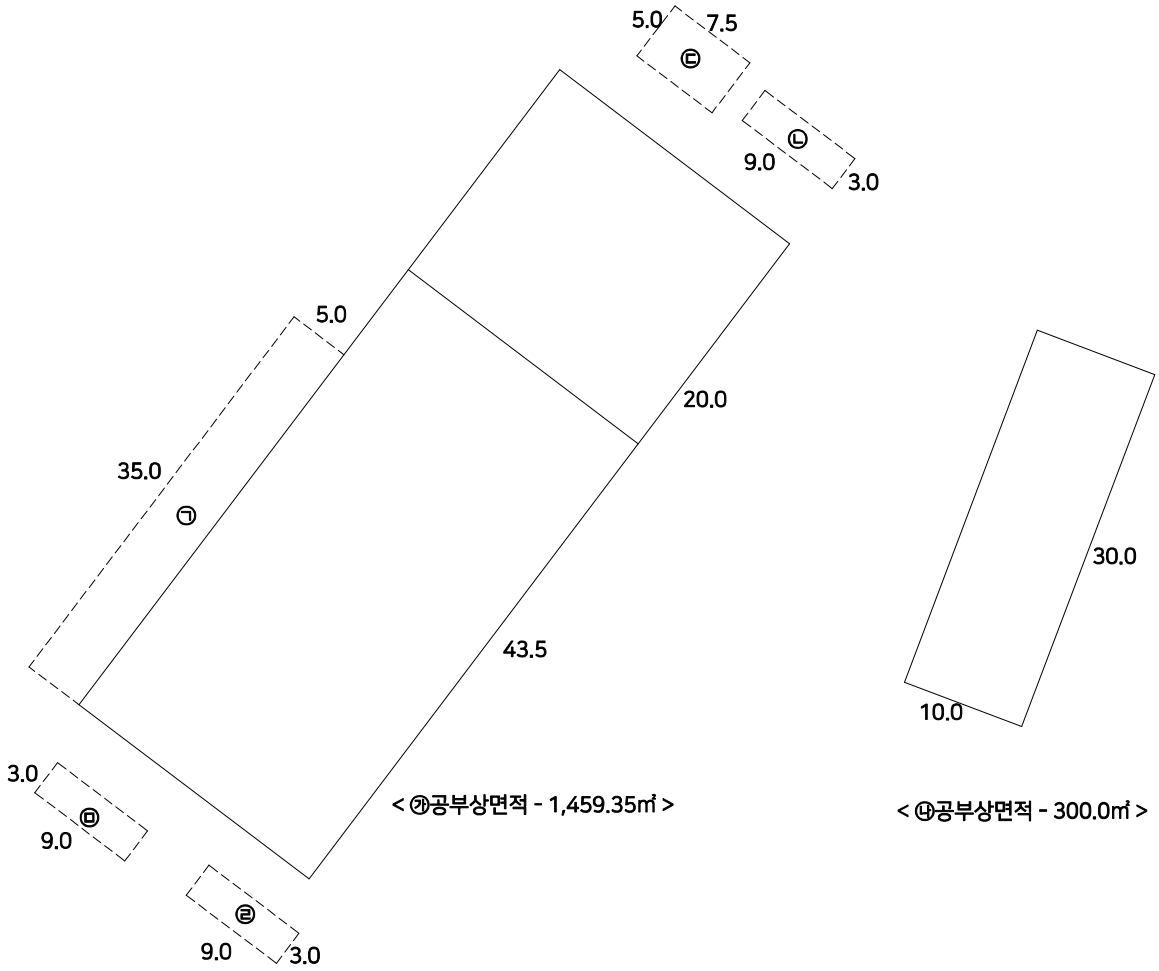


지적 및 건물 개황도


N
S = 1/1400
59
37
선하지
37-2
㉢
㉡
㉠
㉮
②삼구의사
①삼구
㉯
㉰
㉣
40-2
40-1
39-2
40-3
138-9
46-2
138-8
46
-1
46
41
138-7
43-2
43-1
47
44
45
50
48
현황'도로'
범 례
평가대상토지
도 로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평가건물 3층 이상
제시외
평가제외건물
용도지역구분선

건물 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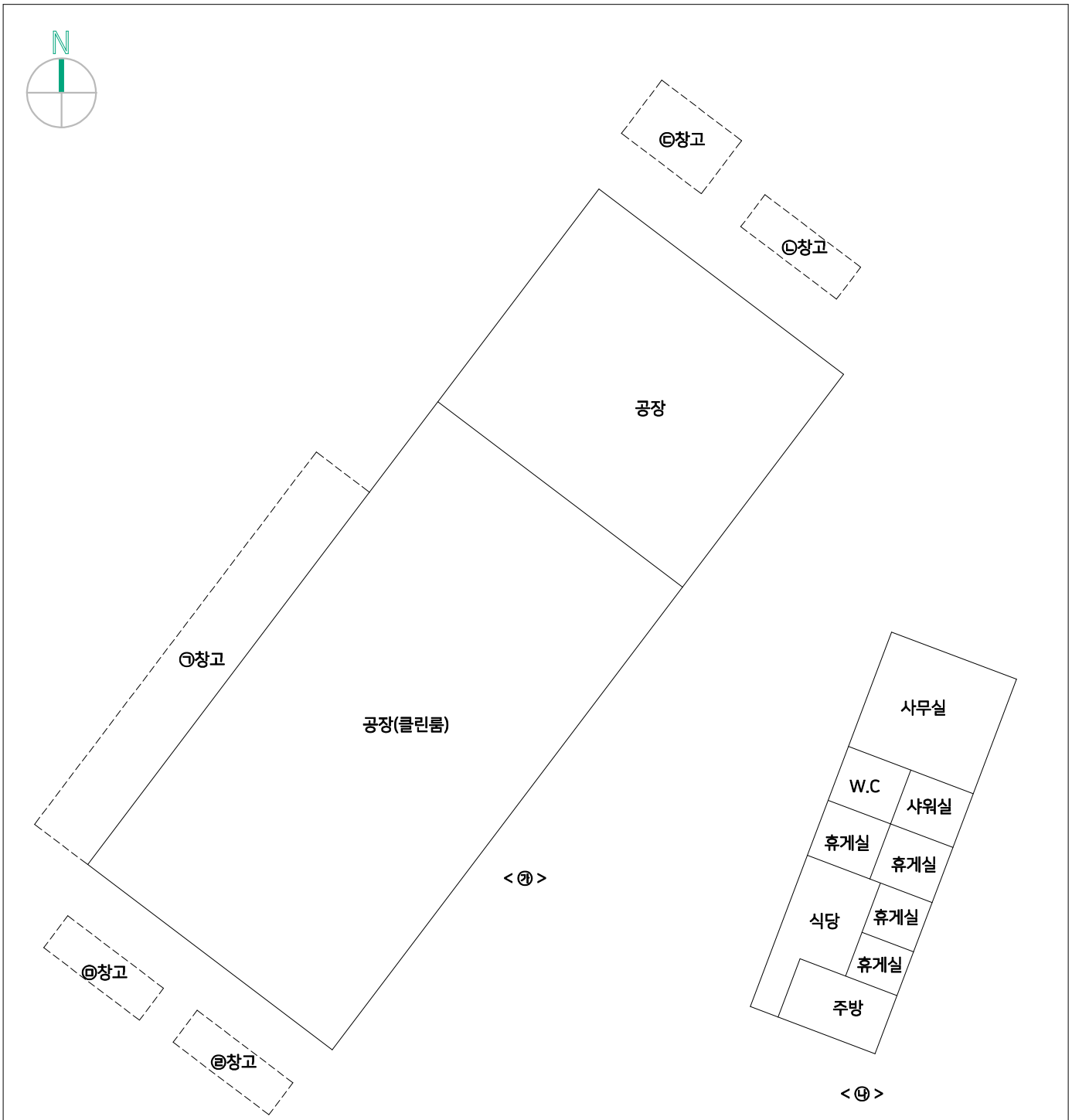
< ㉮공부상면적 - 1,459.35㎡ >

< ㉯공부상면적 - 300.0㎡ >

< 제시외 건물 >

㉠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175.0㎡
㉡ 이동식컨테이너박스 옥외소재 (창고) 약27.0㎡
㉢ 사이딩판넬조 판넬지붕 옥외소재 (창고) 약37.5㎡
㉣ 이동식컨테이너박스 옥외소재 (창고) 약27.0㎡
㉣ 이동식컨테이너박스 옥외소재 (창고) 약27.0㎡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임대부분	상호명	임차인	임대내역		방개수	비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 체			임대미상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주위 전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



일련번호(나)

사 진 용 지



선하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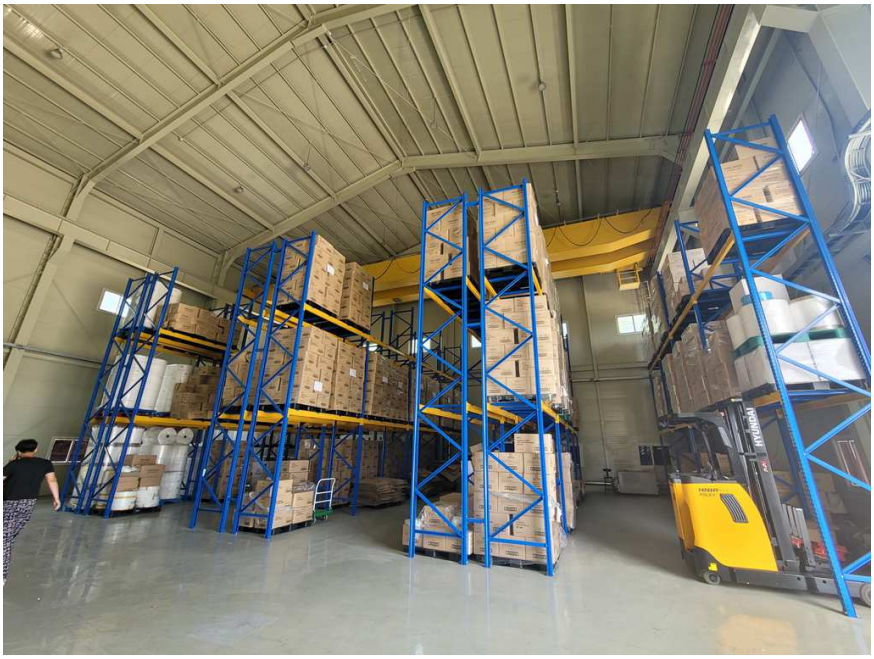


현황 도로 부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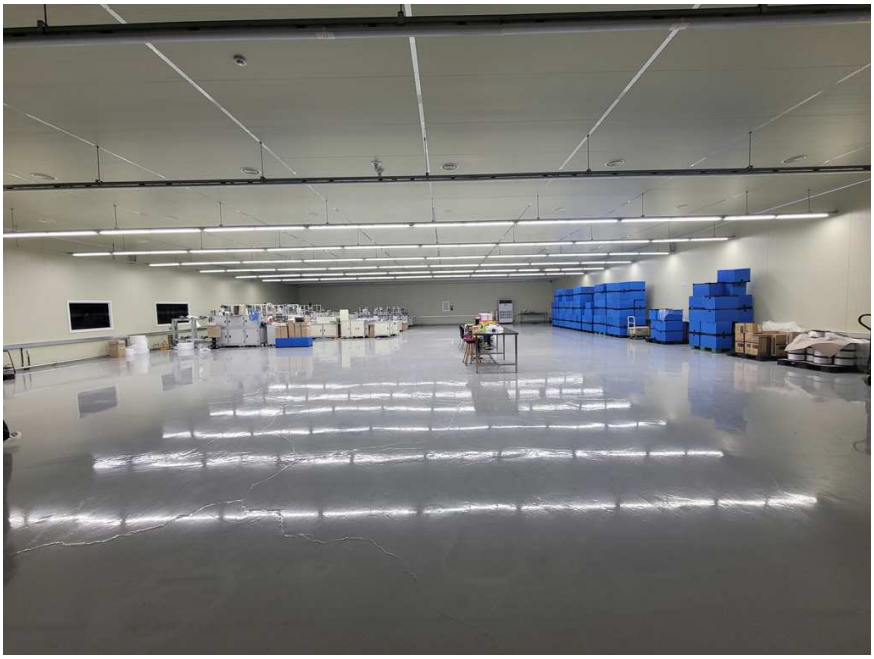


일련번호(2)



일련번호(가) 내부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 내부(클린룸)



일련번호(가) 내부(클린룸)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 내부(클린룸)



일련번호(나) 내부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



제시외건물㉡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



제시외건물㉣,㉤